

항공우주와 전략기술 수출관리제도

최시명^{1)*}

전략물자관리원¹⁾

* 교신저자, E-mail: smchoi@kosti.or.kr

UN안보리결의 1540호(2004.4)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 규범화되었으며, 회원국 각국은 제도의 이행과 처벌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수출통제를 위반한 기업·대학·연구소 등은 거래부적격자(Denial List)에 등재되어 수출제한, 첨단기술의 도입 제한은 물론, 기관의 대외이미지 실추 등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UN 등 국제사회는 북한, 이란 등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확산 우려국에 대한 제재조치로써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채택하는 등 수출통제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사회는 제품에 대한 수출통제 외에 기술에 대한 통제강화를 요구해 왔다. 특히, UN안보리결의 1718호와 1737호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략기술의 무형이전(ITT;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통제를 법제화하였으며, 우리나라는 美·日·英 등 주요 선진국이 채택 중인 기술의 무형이전에 대한 명확한 통제근거를 대외무역법에 마련한 상태이다. 이에 우주발사체와 탄도미사일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추진시스템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전략기술로 지정한 추진시스템 관련 전략기술을 알아보고, 국제동향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